

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7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. 27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,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상위법 관련 조항 정정
 - 제1조(목적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→ 제37조
 - 제9조(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→ 제37조제2항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8. 9. ~ 2023. 8. 30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[붙임 1]

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9조” 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7조” 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” 을 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”
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의정법무과
입	실·과장	의정법무과장
	직위·성명	박 상 숙
안	담당·팀장	의정협력팀장
	직위·성명	백 인 호
자	담 당 자	안 경 란
	성명·전화	(행정 1791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39조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9조(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) ① 시장은 <u>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</u>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37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) ① ----- <u>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